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02

발의연월일: 2022. 8. 8.

발 의 자:서삼석·고민정·김철민

서동용 · 오영환 · 이개호

이상헌 • 이원택 • 정성호

정일영 · 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에 한하여만 임차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양식업의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 등의 경우 단기간에 기존의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등 어촌단체와의 유대형성을 통하여그들이 소유한 공동체면허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개인소유의양식업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이들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사회 정착을 지원할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유수면 내 양식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귀어인들의 어

촌정착을 돕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귀어인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임대 및 재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을 "양식업권(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양식업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임대하는 경우

제6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 임대 비용 등의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①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	①
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3. 양식업권(제10조제1항제7호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	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
고 있는 양식업권을 대통령령	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u><신 설></u>	4.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
	의 장이 해당 양식업권 소유
	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
	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
	<u> </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양식창업 지원) ① 해양수	제65조(양식창업 지원) ①
산부장관은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u><신 설></u>

② (생 략)

- 1. 2. (현행과 같음)
- 3.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양식업권 임대 비용 등의 지원
- ② (현행과 같음)